

제364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 12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11월26일(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11.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12.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6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6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66.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계획 보고
67.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6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69. 2019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계속)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6
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김중회 · 황주홍 · 이찬열 · 임종성 · 최도자 · 이용호 · 장병완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의원 발의) .....	6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 · 정갑윤 · 원유철 · 이채익 · 김성찬 · 김한표 · 권성동 · 박완수 · 강석진 · 안상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65) .....	6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 · 김기선 · 정용기 · 박대출 · 김도읍 · 엄용수 · 박완수 · 이채익 · 정갑윤 · 김성찬 · 민경욱 · 이상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60) .....	6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김종민 · 이후삼 · 전재수 · 김해영 · 박재호 · 홍의락 · 윤준호 · 이상헌 · 송기현 · 안호영 · 정인화 의원 발의) .....	6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이용호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중회 의원 발의) .....	6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 · 김규환 · 곽대훈 · 이종배 · 박맹우 · 김태흠 · 김기선 · 심재철 · 이현재 · 김선동 · 최연혜 · 박성중 · 정유섭 · 윤종필 의원 발의) .....	7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 · 유동수 · 이동섭 · 이종명 · 김재원 · 김경진 · 이채익 · 윤종필 · 홍일표 · 김승희 · 정갑윤 의원 발의) .....	7
8.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김중회 · 장병완 · 정동영 · 박지원 · 김경진 · 윤영일 · 이찬열 · 황주홍 · 정춘숙 · 김수민 의원 발의) .....	7
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신창현 · 이훈 · 박정 · 최인호 · 이찬열 · 김해영 · 박광온 · 김병기 · 이춘석 의원 발의) .....	7
10.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 · 염동열 · 강석호 · 이철규 · 정우택 · 김성원 · 조훈현 · 이은재 · 함진규 · 김정재 · 박명재 · 장석춘 · 이은권 · 전혜숙 · 어기구 · 송기현 · 유동수 · 정재호 · 권칠승 · 김삼화 · 김종훈 · 김종대 · 정종섭 · 송언석 · 김두관 · 소병훈 · 홍익표 · 위성곤 · 홍의락 의원 발의) .....	7
11.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 · 윤호중 · 이찬열 · 김철민 · 송옥주 · 권칠승 · 김병기 · 윤관석 · 이종걸 · 안호영 · 주승용 의원 발의) .....	7
12.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 · 김종민 · 백혜련 · 이춘석 · 강길부 · 이훈 · 이용주 · 김성수 · 이상돈 · 박지원 의원 발의) .....	7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 · 최인호 · 신경민 · 전재수 · 윤호중 · 김병관 · 권칠승 · 박재호 · 박홍근 · 윤준호 · 이춘석 의원 발의) .....	7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박정 · 박광온 · 김해영 · 이수혁 · 김병욱 · 고용진 · 이춘석 · 임종성 · 송갑석 의원 발의) .....	7
1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학재 · 김경진 · 이동섭 · 이혜훈 · 최도자 · 이찬열 · 송옥주 · 이언주 · 이용호 의원 발의) .....	7
1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 · 이원욱 · 심기준 · 고용진 · 김철민 · 송옥주 · 전현희 · 김영호 · 김경협 · 이동섭 · 박찬대 · 박정 · 안규백 의원 발의) .....	7
1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권은희 · 최도자 · 이동섭 · 최경환(평) · 김중회 · 김수민 · 김중로 · 이찬열 · 김관영 의원 발의) .....	7
1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강훈식 · 송옥주 · 권칠승 · 우원식 · 윤후덕 · 김영진 · 김병관 · 박정 · 김병기 의원 발의) .....	7
1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 · 백승주 · 김기선 · 이명수 · 김정재 · 정진석 · 김승희 · 정운천 · 곽대훈 · 김규환 · 이채익 · 정유섭 · 김도읍 · 장제원 · 유기준 · 김성찬 · 金成泰 · 정갑윤 · 정우택 · 최교일 · 윤종필 의원 발의) .....	7
2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임이자 · 이찬열 · 이언주 · 김중로 · 정동영 · 김광수 · 김중회 · 원유철 · 정인화 의원 발의) .....	7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 · 이종명 · 전희경 · 김기선 · 조훈현 · 정운천 · 김종석 · 정유섭 · 이언주 · 성일중 · 송희경 의원 발의) ..... 7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심재철 · 김태흠 · 정태욱 · 김기선 · 성일중 · 추경호 · 곽대훈 · 김정재 · 정진석 의원 발의) ..... 7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 · 박지원 · 김경진 · 유성엽 · 박선숙 · 윤영일 · 김종희 · 전해숙 · 김광수 · 장병완 의원 발의) ..... 7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홍일표 · 이종배 · 윤영석 · 유재중 · 곽대훈 · 김석기 · 이채익 · 권성동 · 함진규 의원 발의) ..... 7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동섭 · 이태규 · 김동철 · 김관영 · 정병국 · 이언주 · 권은희 · 이찬열 · 김중로 · 박주선 · 하태경 의원 발의) ..... 7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정진석 · 이종명 · 박인숙 · 유기준 · 신상진 · 박성중 · 김진태 · 김재경 · 정태욱 의원 발의) ..... 8
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김동철 · 민병두 · 민홍철 · 박찬대 · 신창현 · 윤후덕 · 이상현 · 전해숙 · 정춘숙 의원 발의) ..... 8
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 · 김병기 · 김철민 · 송갑석 · 이규희 · 정춘숙 · 안호영 · 김영진 · 강병원 · 최인호 · 임종성 · 김종민 의원 발의) ..... 8
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홍영표 · 송갑석 · 노웅래 · 김현권 · 김철민 · 원혜영 · 김경협 · 김병기 · 김상희 · 조승래 · 소병훈 · 최재성 · 김병관 · 이춘석 · 이용득 · 김혜영 · 김한정 · 이원욱 · 이훈 의원 발의) ..... 8
3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학재 · 김경진 · 이동섭 · 이혜훈 · 최도자 · 이찬열 · 송옥주 · 이언주 · 이용호 의원 발의) ..... 8
3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이언주 · 권칠승 · 박정 · 김종민 · 황희 · 송갑석 · 금태섭 · 강길부 · 김성환 의원 발의) ..... 8
3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 · 김성원 · 박명재 · 조경태 · 김명연 · 나경원 · 송기현 · 권성동 · 김기선 · 이철규 · 이양수 · 임이자 · 김현아 의원 발의) ... 8
33.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 · 김종민 · 백혜련 · 이춘석 · 강길부 · 이훈 · 이용주 · 김성수 · 이상돈 · 박지원 의원 발의) ..... 8
3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 · 이채익 · 유동수 · 박영선 · 이종배 · 이상현 · 김종훈 · 김도읍 · 성일중 · 권성동 · 권칠승 · 홍의락 · 조정대 의원 발의) ..... 8
3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희 · 장병완 · 정동영 · 박지원 · 김경진 · 윤영일 · 이찬열 · 황주홍 · 정춘숙 · 김수민 의원 발의) ..... 8
3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신경민 · 박정 · 김철민 · 이원욱 · 김병기 · 신창현 · 윤호중 · 김혜영 · 송갑석 · 박선숙 · 이규희 · 이수혁 · 송옥주 · 윤관석 · 전현희 의원 발의) ..... 8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김영진 · 강훈식 · 권칠승 · 조정태 · 김철민 · 김병기 · 윤후덕 · 강병원 · 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92) ..... 8
3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김영진 · 강훈식 · 권칠승 · 조정태 · 김철민 · 김병기 · 윤후덕 · 강병원 · 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04) ..... 8
3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민병두 · 박정 · 송옥주 · 이상현 · 박주민 · 금태섭 · 남인순 · 강훈식 · 김정우 · 김병기 · 원혜영 · 안규백 의원 발의) ..... 8
4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 · 김현아 · 안상수 · 나경원 · 민경욱 · 정양석 · 곽대훈 · 홍일표 · 윤상현 · 홍문중 · 이학재 의원 발의) ..... 8
4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송갑석 · 권칠승 · 김영주 · 전현희

- 김종민 · 이춘석 · 윤관석 · 김현권 · 송옥주 의원 발의) ..... 8
4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 · 장병완 · 정동영 · 박지원 · 김경진 · 윤영일 · 이찬열 · 황주홍 · 정춘숙 · 김수민 의원 발의) ..... 8
43.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윤재옥 · 이동섭 · 이철규 · 황주홍 · 이찬열 · 임재훈 · 유기준 · 김수민 · 원유철 의원 발의) ..... 8
44.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 · 윤후덕 · 조승래 · 권미혁 · 박영선 · 윤일규 · 이후삼 · 소병훈 · 김철민 · 서영교 · 박완주 · 김병욱 · 송기현 · 김두관 · 임종성 · 박정 · 심기준 · 유은혜 · 노웅래 의원 발의) ..... 8
45.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 · 황주홍 · 이찬열 · 임종성 · 최도자 · 장병완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 정인화 의원 발의) ..... 9
46.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 · 백재현 · 권칠승 · 이인영 · 기동민 · 설훈 · 김상희 · 안민석 · 서삼석 · 박광온 · 정세균 · 인재근 의원 발의) ..... 9
4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 · 장석춘 · 김성원 · 강석진 · 엄용수 · 안상수 · 이종명 · 이양수 · 추경호 · 권성동 의원 발의) ..... 9
4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 · 한정애 · 김종석 · 김병관 · 노웅래 · 변재일 · 윤후덕 · 유동수 · 오세정 · 김동철 의원 발의) ..... 9
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 · 김삼화 · 김종회 · 신보라 · 주승용 · 손금주 · 권은희 · 강길부 · 이찬열 · 이동섭 · 정병국 의원 발의) ..... 9
5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유민봉 · 윤한홍 · 경대수 · 함진규 · 김성원 · 이정현 · 김재원 · 김명연 · 최연혜 의원 발의) ..... 9
5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주승용 · 이찬열 · 김종로 · 이동섭 · 김삼화 · 오세정 · 하태경 · 김수민 · 오제세 의원 발의) ..... 9
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 · 김기선 · 김종석 · 성일중 · 송희경 · 윤상직 · 이언주 · 이종명 · 전희경 · 정운천 · 정유섭 · 조훈현 의원 발의) ..... 9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 · 김기선 · 김명연 · 김도읍 · 김상훈 · 김석기 · 김규환 · 정갑윤 · 곽상도 · 유재중 의원 발의) ..... 9
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천정배 · 김경진 · 정인화 · 윤영일 · 이용주 · 김광수 · 신용현 · 장정숙 · 김종회 · 황주홍 의원 발의) ..... 9
5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 · 백재현 · 권칠승 · 김종민 · 이인영 · 기동민 · 설훈 · 김상희 · 서삼석 · 박광온 · 정세균 · 인재근 의원 발의) ..... 9
5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박정 · 최인호 · 박홍근 · 김해영 · 이수혁 · 이춘석 · 박재호 · 정재호 · 고용진 의원 발의) ..... 9
5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 · 송언석 · 한선교 · 박인숙 · 김성원 · 곽대훈 · 이만희 · 김학용 · 김광림 · 장석춘 · 윤한홍 · 박맹우 · 이종배 · 김기선 · 이혜훈 · 김규환 · 박성중 · 김정재 · 송석준 · 경대수 · 황영철 · 정양석 · 정진석 · 김석기 · 강석호 · 조훈현 · 민경욱 · 최교일 · 추경호 · 윤상직 · 김명연 · 나경원 · 金成泰 · 임이자 · 문진국 · 함진규 · 유재중 · 김세연 · 강효상 · 홍일표 · 김선동 · 성일중 의원 발의) ..... 9
5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 · 이찬열 · 안호영 · 임종성 · 윤후덕 · 강병원 · 권칠승 · 김경협 · 정춘숙 · 강훈식 의원 발의) ..... 9
5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 · 장병완 · 정동영 · 박지원 · 김경진 · 윤영일 · 이찬열 · 황주홍 · 정춘숙 · 김수민 의원 발의) ..... 9
6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신상진 · 원유철 · 박맹우 · 박덕흠 · 함진규 · 김상훈 · 강효상 · 곽대훈 · 김규환 의원 발의) ..... 9
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박정 · 박홍근 · 김해영 · 이수혁 · 이춘석

· 박재호 · 정재호 · 고용진 · 백재현 의원 발의) ..... 9

6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 · 김병기 · 권칠승 · 박광온 · 송갑석 · 김종민 · 정재호 · 조승래 · 소병훈 · 이수혁 의원 발의) ..... 9

6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신상진 · 원유철 · 박맹우 · 박덕흠 · 함진규 · 김상훈 · 강효상 · 곽대훈 · 김규환 의원 발의) ..... 9

6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신상진 · 원유철 · 박맹우 · 박덕흠 · 함진규 · 김상훈 · 강효상 · 곽대훈 · 김규환 의원 발의) ..... 10

6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10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4

67. 2019년도 예산안(계속) ..... 14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6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14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69. 2019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계속) ..... 14

66. 한-러 서비스 · 투자 FTA 추진계획 보고 ..... 17

(10시31분 개의)

○위원장 홍일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부기관장 대리출석을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에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이사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홍일표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3항은 11월 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상정 여부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43항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 · 황주홍 · 이찬열 · 임종성 · 최도자 · 이용호 · 장병완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의원 발의)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 · 정갑윤 · 원유철 · 이채익 · 김성찬 · 김한표 · 권성동 · 박완수 · 강석진 · 안상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65)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 · 김기선 · 정용기 · 박대출 · 김도읍 · 엄용수 · 박완수 · 이채익 · 정갑윤 · 김성찬 · 민경욱 · 이상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60)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김종민 · 이후삼 · 전재수 · 김해영 · 박재호 · 홍의락 · 윤준호 · 이상헌 · 송기현 · 안호영 · 정인화 의원 발의)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이용호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종회 의원 발의)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김규환·곽대훈·이종배·박맹우·김태흠·김기선·심재철·이현재·김선동·최연혜·박성중·정유섭·윤종필 의원 발의)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유동수·이동섭·이종명·김재원·김경진·이채익·윤종필·홍일표·김승희·정갑윤 의원 발의)
8.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희·장병완·정동영·박지원·김경진·윤영일·이찬열·황주홍·정춘숙·김수민 의원 발의)
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신창현·이훈·박정·최인호·이찬열·김해영·박광운·김병기·이춘석 의원 발의)
10.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염동열·강석호·이철규·정우택·김성원·조훈현·이은재·함진규·김정재·박명재·장석춘·이은권·전혜숙·어기구·송기현·유동수·정재호·권칠승·김삼화·김종훈·김종대·정종섭·송언석·김두관·소병훈·홍익표·위성곤·홍의락 의원 발의)
11.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윤호중·이찬열·김철민·송옥주·권칠승·김병기·윤관석·이종걸·안호영·주승용 의원 발의)
12.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김종민·백혜련·이춘석·강길부·이훈·이용주·김성수·이상돈·박지원 의원 발의)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최인호·신경민·전재수·윤호중·김병관·권칠승·박재호·박홍근·윤준호·이춘석 의원 발의)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박정·박광운·김해영·이수혁·김병욱·고용진·이춘석·임종성·송갑석 의원 발의)
1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학재·김경진·이동섭·이혜훈·최도자·이찬열·송옥주·이연주·이용호 의원 발의)
1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원욱·심기준·고용진·김철민·송옥주·전현희·김영호·김경협·이동섭·박찬대·박정·안규백 의원 발의)
1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권은희·최도자·이동섭·최경환(평)·김종희·김수민·김중로·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
1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강훈식·송옥주·권칠승·우원식·윤후덕·김영진·김병관·박정·김병기 의원 발의)
1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백승주·김기선·이명수·김정재·정진석·김승희·정운천·곽대훈·김규환·이채익·정유섭·김도읍·장제원·유기준·김성찬·金成泰·정갑윤·정우택·최교일·윤종필 의원 발의)
2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임이자·이찬열·이연주·김중로·정동영·김광수·김종희·원유철·정인화 의원 발의)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이종명·전희경·김기선·조훈현·정운천·김종석·정유섭·이연주·성일중·송희경 의원 발의)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심재철·김태흠·정태욱·김기선·성일중·추경호·곽대훈·김정재·정진석 의원 발의)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박지원·김경진·유성엽·박선숙·윤영일·김종희·전혜숙·김광수·장병완 의원 발의)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홍일표·이종배·윤영석·유재중·곽대훈·김석기·이채익·권성동·함진규 의원 발의)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동섭·이태규·김동철·김관영·정병국·이연주·권은희·이찬

열 · 김중로 · 박주선 · 하태경 의원 발의)

-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정진석 · 이종명 · 박인숙 · 유기준 · 신상진 · 박성중 · 김진태 · 김재경 · 정태욱 의원 발의)
- 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김동철 · 민병두 · 민홍철 · 박찬대 · 신창현 · 윤후덕 · 이상헌 · 전혜숙 · 정춘숙 의원 발의)
- 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 · 김병기 · 김철민 · 송갑석 · 이규희 · 정춘숙 · 안호영 · 김영진 · 강병원 · 최인호 · 임종성 · 김종민 의원 발의)
- 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 · 홍영표 · 송갑석 · 노웅래 · 김현권 · 김철민 · 원혜영 · 김경협 · 김병기 · 김상희 · 조승래 · 소병훈 · 최재성 · 김병관 · 이춘석 · 이용득 · 김해영 · 김한정 · 이원욱 · 이훈 의원 발의)
- 3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학재 · 김경진 · 이동섭 · 이혜훈 · 최도자 · 이찬열 · 송옥주 · 이언주 · 이용호 의원 발의)
- 3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이언주 · 권칠승 · 박정 · 김종민 · 황희 · 송갑석 · 금태섭 · 강길부 · 김성환 의원 발의)
- 3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 · 김성원 · 박명재 · 조경태 · 김명연 · 나경원 · 송기현 · 권성동 · 김기선 · 이철규 · 이양수 · 임이자 · 김현아 의원 발의)
- 33.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 · 김종민 · 백혜련 · 이춘석 · 강길부 · 이훈 · 이용주 · 김성수 · 이상돈 · 박지원 의원 발의)
- 3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 · 이채익 · 유동수 · 박영선 · 이종배 · 이상헌 · 김종훈 · 김도읍 · 성일중 · 권성동 · 권칠승 · 홍의락 · 조경태 의원 발의)
- 3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희 · 장병완 · 정동영 · 박지원 · 김경진 · 윤영일 · 이찬열 · 황주홍 · 정

춘숙 · 김수민 의원 발의)

- 3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신경민 · 박정 · 김철민 · 이원욱 · 김병기 · 신창현 · 윤호중 · 김해영 · 송갑석 · 박선숙 · 이규희 · 이수혁 · 송옥주 · 윤관석 · 전현희 의원 발의)
-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김영진 · 강훈식 · 권칠승 · 조경태 · 김철민 · 김병기 · 윤후덕 · 강병원 · 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92)
- 3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김영진 · 강훈식 · 권칠승 · 조경태 · 김철민 · 김병기 · 윤후덕 · 강병원 · 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04)
- 3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민병두 · 박정 · 송옥주 · 이상헌 · 박주민 · 금태섭 · 남인순 · 강훈식 · 김정우 · 김병기 · 원혜영 · 안규백 의원 발의)
- 4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 · 김현아 · 안상수 · 나경원 · 민경욱 · 정양석 · 곽대훈 · 홍일표 · 윤상현 · 홍문중 · 이학재 의원 발의)
- 4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송갑석 · 권칠승 · 김영주 · 전현희 · 김종민 · 이춘석 · 윤관석 · 김현권 · 송옥주 의원 발의)
- 4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희 · 장병완 · 정동영 · 박지원 · 김경진 · 윤영일 · 이찬열 · 황주홍 · 정춘숙 · 김수민 의원 발의)
- 43.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윤재욱 · 이동섭 · 이철규 · 황주홍 · 이찬열 · 임재훈 · 유기준 · 김수민 · 원유철 의원 발의)
- 44.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 · 윤후덕 · 조승래 · 권미혁 · 박영선 · 윤일규 · 이후삼 · 소병훈 · 김철민 · 서영교 · 박



- 완주·김병욱·송기현·김두관·임종성·박정·심기준·유은혜·노웅래 의원 발의)
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황주홍·이찬열·임종성·최도자·장병완·유성엽·윤영일·김수민·정인화 의원 발의)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백재현·권칠승·이인영·기동민·설훈·김상희·안민석·서삼석·박광운·정세균·인재근 의원 발의)
4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장석춘·김성원·강석진·엄용수·안상수·이종명·이양수·추경호·권성동 의원 발의)
4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한정애·김종석·김병관·노웅래·변재일·윤후덕·유동수·오세정·김동철 의원 발의)
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삼화·김종회·신보라·주승용·손금주·권은희·강길부·이찬열·이동섭·정병국 의원 발의)
5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유민봉·윤한홍·경대수·함진규·김성원·이정현·김재원·김명연·최연혜 의원 발의)
5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주승용·이찬열·김중로·이동섭·김삼화·오세정·하태경·김수민·오제세 의원 발의)
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김기선·김종석·성일중·송희경·윤상직·이언주·이종명·전희경·정운천·정유섭·조훈현 의원 발의)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김기선·김명연·김도읍·김상훈·김석기·김규환·정갑윤·곽상도·유재중 의원 발의)
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장병완·천정배·김경진·정인화·윤영일·이용주·김광수·신용현·장정숙·김종희·황주홍 의원 발의)
5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백재현·권칠승·김종민·이인영·기동민·설훈·김상희·서삼석·박광운·정세균·인재근 의원 발의)
5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박정·최인호·박홍근·김해영·이수혁·이춘석·박재호·정재호·고용진 의원 발의)
5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송언석·한선교·박인숙·김성원·곽대훈·이만희·김학용·김광립·장석춘·윤한홍·박맹우·이종배·김기선·이혜훈·김규환·박성중·김정재·송석준·경대수·황영철·정양석·정진석·김석기·강석호·조훈현·민경욱·최교일·추경호·윤상직·김명연·나경원·金成泰·임이자·문진국·함진규·유재중·김세연·강효상·홍일표·김선동·성일중 의원 발의)
5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이찬열·안호영·임종성·윤후덕·강병원·권칠승·김경협·정춘숙·강훈식 의원 발의)
5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장병완·정동영·박지원·김경진·윤영일·이찬열·황주홍·정춘숙·김수민 의원 발의)
6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신상진·원유철·박맹우·박덕흠·함진규·김상훈·강효상·곽대훈·김규환 의원 발의)
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박정·박홍근·김해영·이수혁·이춘석·박재호·정재호·고용진·백재현 의원 발의)
6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김병기·권칠승·박광운·송갑석·김종민·정재호·조승래·소병훈·이수혁 의원 발의)
6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신상진·원유철·박맹우·박덕

흠·함진규·김상훈·강효상·곽대훈·김규환 의원 발의)

**6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신상진·원유철·박맹우·박덕흠·함진규·김상훈·강효상·곽대훈·김규환 의원 발의)

**6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홍일표** 그러면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5항까지 김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4건의 법률안과 1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법률안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에 상정된 법률안을 일괄하여 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직접 구두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으셔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의원이 보고하고자 하는 법안만 제외하고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48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6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수소경제사회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전환을 위해 수소를 활용한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수소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수소산업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투자 가치

가 불확실하다는 점, 현재 수소는 생산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으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권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LPG 사용 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1600cc 미만의 소형 승용차는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칙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정부는 LPG 연료 사용 제한 완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LPG 자동차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고, LPG 사용 제한 완화 시 LPG 수요 증가분을 추가로 수입할 정도의 물량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너지 세제 개편이 선행된 이후 LPG 사용 제한 완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정유업계 등의 반대 의견이 있고, 연계된 벌칙 규정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환 및 중소기업 인수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사업 전환 관련 절차 간소화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가능케 하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수를 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소기업부는 개정안의 특례조항이 중견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례이고 중소기업과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중점 유치 사업에 대하여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와 같은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통과된 지역특구법의 논의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수도권 쏠림을 보완하기 위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의결된 바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경제특구로 지정한 기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특례 도입의 검토가 요구되는 측면도 있어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포함 3건의 법률안은 특허료, 상표등록료,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출원인 등이 반환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반환 청구 기간을 확대하고 적용례를 두는 것은 고객에게 과·오납부된 부분을 반환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입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이번에 제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돼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이나 노하우가 기업 발전에 필수적이나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면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이 성공하여 성장할수록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커지나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은 부족한 창업자가 계속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성공할수록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 대기업이나 해외 헤지펀드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역설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의결권에 대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주식은 현행 법체계상 발

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창업자에 한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면 의결권이 1개로 전환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차등의결권의 적용 대상이 대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지배주주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점에 대해 본 의원도 공감하며, 이를 감안하여 적용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였고 총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차등의결권의 존속 기간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면 의결권이 1개로 전환되도록 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인지 향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만 차등의결권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고 투자하는 투자자의 관심은 경영권이라기보다는 배당이나 주가 상승 등에 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 리스크가 없이 경영에 전념함으로써 오히려 기업 가치가 상승되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상장할 때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장 규정으로 어떠한 사항을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할 부분입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무의결권주식이나 특정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차등의결권주식도 벤처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등의결권제도는 올해 상반기 본 의원이 참여한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에서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앞장서 주장해 온 의원으로서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상법의 개정 및 공정경쟁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제도를

비롯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활발하게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막연한 악용 가능성을 염려만 하는 것보다는 제도의 장점은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장치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생산적인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은 기존의 선입견에 얽매이지 말고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법이 창업 열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는 한편 전환기를 맞은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본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및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구두보고를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호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연 40% 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위탁 기업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의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납품대금은 해당 부분만큼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위탁 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감액한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조항을 시정명령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일부 조문 체계상의 수정사항이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시정명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한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차등의결권주식제도의 도입은 창업자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주식 발행을 통하여 자금 조달을 용이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고 현재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결권이 희석된 기존 주주나 소수 주주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고 무능력한 경영진까지 과도하게 보호하여 경영권의 이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상법에서 주주 평등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 논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동意的 철회 가능 여부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의 미비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등을 참고하여 철회 시기 등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는 것을 7년으로 연장하고, 제조업 창업자에 대하여 3년 동안 면제하는 부담금을 현

재 12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을 추가하여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제조업 창업기업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부담금의 종류 및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에 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어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소위에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시려는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면 토론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14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13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데요.

요새 태양광 모듈의 내용연수를 보통 얼마로 보는 거예요, 장관님? 지금 20년 이상 쓰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여러 자료를 비교해 보면 10년 지나면 한 10% 정도 줄어들고, 20년 지나면 한 80% 정도까지는 효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매년 0.65에서 0.7 이렇게 줄어 간다. 한 30년 가깝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김해영 의원이 법안을 냈던 이유도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다'를 '한하여'라는 말을 빼는 것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취지에 대한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래서 심의할 때 차관님 태양광 모듈이나 또는 풍력발전 같은 장비도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확인해서…… 최소한도 내용연수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

어야 이 산업이 기본적으로 틀이 만들어지고 에너지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설치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함께 잘 검토해서 사업자가 투자를 해도 자기가 이 기계에 대해서 충분한 수명 기간만큼 쓸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정유섭 위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강화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지방 우선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신설 공공기관의 지방 설립에 대해서는 별 질문 사항이 없는데 1차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정부가 추진해 왔어요. 그것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또는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분석 없이 2차로 이렇게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나 효과 분석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런 것 분석하고 2차로 이것을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한 무슨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지, 사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단점도 발견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 없이 2차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냐면 저희 인천 지역 같은 경우 서울·경기도하고 지역경제 주요 지표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에 있는 해양 관련 6개 기관들을 부산으로 옮겼어요, 인천도 분명히 해양 도시인데.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분석 없이 2차로 또 수도권에 있는…… 뭐 옮겨야 될 기관도 있겠지요. 그러나 1차로 옮긴 기관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 적절한 이전이었던지, 효과는 있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 없이 2차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이런 법안에 대해

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이전에 대한 무슨 효과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인위적으로 또 이전하는 것이 맞느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확대 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방 이전 정책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 효과 분석 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평가해 보고 또 분석도 한 다음에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35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의사일정 36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49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65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과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은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55분)

○**위원장 홍일표**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 3건을 의사일정 제67항, 68항, 69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7.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6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기업부 소관

**69. 2019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계속)**

○**위원장 홍일표** 의사일정 제67항부터 69항까지 총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이종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종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종배**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종배 소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4168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204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산업기술대 운영지원 사업은 학과 개편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을 위해 350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재 부품산업 미래 성장동력 사업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을 위해 2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혁신성장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은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산업 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 중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사업은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에서는 157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은 스마트 제조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160억 원을 증액하였고, 투자 유치 기반 조성 사업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유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하여 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4031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바우처사업은 35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사업은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과제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스마트시티용 에너지 솔루션 확보 기술개발 사업은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수입에서 350억 원을 감액하고, 지출에서 529억 49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5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은 각각 983억 원, 910억 원을 감액하거나 정부안 원안을 유지하는 의견을 함께 채택하였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는 수입에서 기타잡 수입 251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정책 제검토를 위하여 2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역보험기금에서는 연례적 불용 및 19년도 산출 기준상 특이치를 감안하여 무역보험환급금등 사업에서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4910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12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ICT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205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중소기업 명품관 신규 설치 등을 위하여 111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TIPS타운 건립 지연에 따라 민관협력창업자 육성사업에서는 5억 8000만 원의 운영비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에서는 창업인프라 지원사업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위하여 130억 원 등 총 174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수입에서는 기타잡 수입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에서는 5568억 61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6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사업에서 지방벤처펀드, 민간제안펀드 등의 추가 조성을 위하여 출자금 5320억 원을 증액하고 수출인큐베이터사업에서 글로벌혁신성장센터 추가 건립을 위하여 30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관행적 목적 외 사용을 감안하여 해외산업협력 지원사업에서 6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3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10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소상공인성장 지원사업은 13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빈 점포 매입 활용 프로그램 신규 추진을 위하여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에서 14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는 391억 3100만 원을 증액하는 대신 일반회계 전출금 391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은 IP서비스 지원기업 확대 및 지식재산 도시 선정·지원을 위하여 183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명교육 활성화사업은 광역 발명교육 지원센터 4개소 추가 설치를 위하여 19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고, 아울러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9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헌법 제57조에 의하면 정부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모 장관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다음 홍종학 장관께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박원주 청장께서는 특허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특허청장 박원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9항 2019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윤모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존경하는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종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소위와 소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고 앞으로 정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종학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위 심의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종배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번 예산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철저히 집행하고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원주 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박원주 존경하는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특허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위 심의 과정에서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이



종배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예결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제언과 지적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특허청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항목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에 촉박한 국회 심의 일정과 회의 소집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으세요?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 예산소위원님들이 참 많은 애를 쓰셔서 지금 이렇게 통과하게 된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딱 한 가지, 신·재생에너지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합의가 덜 돼서 정부 의견과 야당의 의견을 병립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합의를 하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불어 부대의견 등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관과 청장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고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66.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계획 보고

(11시10분)

○위원장 **홍일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6항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

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는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께 차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윤모 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존경하는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국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 FTA 추진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의의도 크다 하겠습니다.

러시아와의 FTA 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그간 러 측이 논의 진행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 국민방문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11년 만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러시아와 FTA 협상을 추진키로 하는 첫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은 향후 양국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의 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양국 간 협상이 공식 개시되면 물류·해운·의료·관광 등 우리 업계가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 시장의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상호 투자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익 극대화과 이익균형의 원칙하에서 협상에 임하겠으며 협상 과정 중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로 추진배경 및 경과, 다음으로 주요 기대효과,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배경 및 경과입니다.

신북방정책의 기반조성을 위해 인구 1억 8000

만 명, GDP 1조 6000억 불의 거대 유망시장인 러시아와 FTA 추진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러시아와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9월 한·러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그간 네 차례의 FTA 실무협의를 집중 진행했고 그 결과 금년 6월 정상 방러 계기에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위해 양국이 국내 절차에 즉시 착수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통상절차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 그리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을 완료했습니다.

2페이지 주요 기대효과입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실질 GDP, 소비자후생, 고용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나리오별 구체적 수치는 안건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비스·투자 분야의 특성상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정성적 효과도 감안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 감소와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러시아와 협상을 개시하면, 첫째 러시아 서비스 시장 개방, 둘째 우리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그리고 셋째,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 산중위 보고를 통해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러시아 측과 조속히 일정을 합의하여 한·러 서비스·투자 FTA 1차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도 주요 계기마다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통상교섭본부장님.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이종배 위원 한·러 FTA가 서비스·투자 분야만 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상품 분야는 못 하는 것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이종배 위원 상품 분야는 EAEU와 FTA 체결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EAEU와의 FTA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2007년도부터 러시아와 상품을 포함한 FTA를 출범시키려고 했었는데, 2015년부터 EAEU가 생겨 가지고 5개 국가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상품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어서 아직도 우리가 설득 과정입니다.

○이종배 위원 본 위원이 한·키르기스스탄 의원연맹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난번에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도 그쪽 의원들과 회의 회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는 빨리 체결하기를 바라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좀 잘 설득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 4개국은 빨리 FTA를 체결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활용해서 조기에 EAEU와 FTA가 체결이 돼야 우리가 유리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제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한·러 FTA 체결에 따라서 실질 GDP가 별로 오르지 않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이종배 위원 0.006% 이러면 굉장히 별 효과가 없는 것이고, 소비자후생도 최대 7500만 불, 최대가 그렇고 대외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3400만 불에서 7500만 불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이종배 위원 고용창출도 1121명 이게 최대지요? 대외경제연구원은 500명에서 1121명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좀 작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거기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앞으로 조속히 EAEU와 FTA를 진행해서 우리가 유리한 제조업 분야, 특히 중소기업들이 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외에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벨라루스하고 카자흐스탄은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외에도 다른 국가들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상품을 포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수출을 보면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가 7억 9000만 불 수출을 했고 그리고 5억 1000만 불을 수입했고, 그래서 서비스 무역흑자는 약 2억 80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해운·의료, 그리고 또 지금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2만 5000명의 러시아 방문객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숫자를 늘리면……

참고로 2만 5000명에 대해서는 와서 사용한 금액이 각 380만 원입니다. 약 100억이 되는 숫자인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최대 개방을 해서 우리가 흑자를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쪽도 많이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의료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의사 자격증을 인정해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직접 진출하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는 원격 진료 이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지금 러시아 쪽에서 우리가 치료한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국경을 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프라이버시 이슈인데 이런 이슈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서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범계 위원님.

그다음에 이훈·조배숙 위원님.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님, 서비스와 투자에 한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상품도 포함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제가 참여정부 때 2007년도에 제 상대방 게르만 그레프 장관하고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양자 협상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러시아가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러시아 측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입니까? 상품 분야까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러시아 측에서는 좀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들이, 만약에 상품 분야에서 FTA 협상을 출범시키면 첫째, 우리가 투자가 줄어들까 봐서 걱정이고, 두 번째는 우리 수출이 너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이 굉장히 민감한 품목들이 있는데, 한 여섯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를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국내산업에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러시아를 두 번 방문하고요, 정부·의회 간 레벨에서만 다섯 번 정도의 교섭이 있었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 측 정부 혹은 의회 관계자들에게—의원들을 포함해서—들은 얘기의 핵심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그 이전 소위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한·러 관계가 급속도로 후퇴했다.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기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많은 후퇴가 있었고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것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인다,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오늘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은 답입니다.

문제인 대통령의 나인브릿지 정책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리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갔다 와 본 결과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병원 또는 해산물 공장—제가 보기에는 아주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매우 현실적이고—그런 쪽에 집중한다, 관심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오늘

처음 들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러시아에 기업들이 진출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제도 지금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프랙티스(business practice) 차원에서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른 면이 있어 가지고……

○**박범계 위원** 그래서 말이에요, 한국 기업이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박범계 위원**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봤고, 현지에서 기업을 열어서 하는 분들도 봤는데요. 어떤 기준들, 스탠더드(standard)가 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고 할 그런 의지는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 우리 상권을 좀 많이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서, 우리가 또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러시아 대도시에서 이런 프랜차이즈 분야 쪽에서 우리가 진출하면 잘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서비스 산업이 많은데, 커피숍이나 빵집이나 미장원이나 기타 등등 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료 분야, 그리고 우리가 더 크게 보면 북극이 녹고 있기 때문에 북극항로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또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한 두 시간 가면 농사지을 수도 있는 대규모 땅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본부장님은 대체로 한미 FTA와 관련해서—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대미 통상 전문가로, 그런 국민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좀 전문성이 계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러시아 전문성은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러시아 측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경제적으로 통상 포함해서 어떤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러시아

쪽에서 관심 있는 것은 특히 야말 프로젝트 쪽에서 가스 수입을 했으면 좋겠고, 2024년에 우리가 쿼터, 우리 수입량의 약 30%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수입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시베리아 그쪽으로 해서 조금 더 진출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 보면 진출해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러시아 지도부에 연결이 좀 잘 돼 가지고 우리의 애로사항을 즉시즉시 풀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범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 어쨌든 FTA라는 것이 일방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하고 본격적으로 상품 관련한 부분 전반적인 FTA를 체결하는 것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서비스나 투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말 프로젝트나 몇 가지 프로젝트 말고는, 지금 현재 러시아와 서비스 교역을 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서유럽, 유럽 쪽이거나 미국인데 제가 아는 선상에서 보면 많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저희들하고도 큰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대부분이 적자고……

그런데 그런 러시아 입장에서 저희들하고 FTA를 정치적인 이유나 정무적인 이유 말고 실제 급박하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유인이 좀 있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위원님, 지금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이 69억 불이고요. 그리고 수입하는 것이 120억 불 아니겠습니까?

○**이훈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아니, 상품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이훈 위원 상품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상품 부분.

○이훈 위원 그러니까 상품 부분은 실제로 러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시작해서 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단순히 한·러 간의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 문제 빼고는 사실은 그 문제가 결국 달라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FTA 진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1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이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서비스·투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적자 보는 입장이고, 크지는 않지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그렇습니다. 약 3억 불 정도 됩니다.

○이훈 위원 예, 3억 불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지금 서비스나 투자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교역관계에 있어서도 다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러시아가요?

○이훈 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보면 전면적인 한·러 FTA 문제는 EAEU FTA 문제하고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당장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을 한다 치는데, 그 분야에서 러시아의 유인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그런데 EAEU와의 상품 FTA를 추진하기 전에 먼저 서비스·투자 양자 FTA 추진을 하자는 그 아이디어는 사실 러시아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훈 위원 아,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설득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서비스하고 상품을 두 개 다 같이 하자고 그랬었는데 러시아가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또 상품 같은 FTA를 체결하면 자동차나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투자를 줄일까 봐서 매우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그쪽 말을 들어 보면 상품 분야에서 FTA를 출범시키려면 한 19개 정도의 부처들이

합의를 봐야 된다는 등 하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꼭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싱가포르처럼—싱가포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서비스를 먼저 진행시키는 것도 아이디어겠다 해 가지고 한국·러시아 FTA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훈 위원 그러면 일단은 서비스·투자 FTA 문제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제기를 했다가 일단 진행을 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러 FTA 추진해야 되는데, EAEU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뭐 큰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문제도 있고 통합인증 문제도 있고 등등 EAEU 시장 자체가 단일시장으로 보기 아직은 제도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EAEU 국가들이 자기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FTA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면적인 다 자기들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데……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EAEU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훈 위원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는데 그쪽의 EAEU와 FTA 추진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제도적인 한계나 시간이 늘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차피 하긴 할 텐데.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이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참여정부 때 2007년도에 러시아를 맨 처음에 접근해 가지고 지금 11년 지나서 이 시점에 와서 그것도 상품을 빼고 한국·러시아 서비스만 먼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러시아 쪽에다가 최대한 이것을 빨리 하자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품 분야에서는 우리가 러시아 국내산업의 민감성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추진하는 과정, 민감성을 추진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훈 위원 저는 정부가 이 FTA 추진하는 것 관련해서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보면,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해 보면 자료에 대한 미비나 협상 관련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공개 등 FTA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가 판단해야 될 근거를 저희가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회에 보고를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자료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것이, 아까 러시아가 2015년부터 EAEU 그걸로 해 가지고 블록으로 지금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조배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만 또 EAEU하고 별도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조 위원님, 지금 서비스는 한국하고 러시아만 하는 겁니다.

○조배숙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서비스 FTA는 한국하고 러시아만 협상하는 겁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블록인데 그 부분을 러시아가 따로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상품만 EAEU로 해서 블록으로 해야 되고요.

○조배숙 위원 상품만 다 저기하고, 서비스는 독자적으로 가능하죠?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도 가능하겠네요, 벨라루스도 독자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다면 저는 좀 궁금한 것이 2015년 이전에 러시아가 다른 나라하고 FTA를 체결한 그런 현황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2015년, 그러니까 EAEU가 생기기 전에요?

○조배숙 위원 예, 독자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그것이 생기고 나서 전체 블록 형태로 됐는데 여기서 FTA가 다른 나라랑 된……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베트남하고 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베트남하고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조배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FTA를 쪽 체결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우리가 흑자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의외로 교역 폭은 넓어졌을지 모르지만 적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적자가 많았고. 그래서 사실 좀 FTA 하는 것에 대해서 글로벌경제·개방경제 시대에 이게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한·EU FTA도 그렇고 계속 적자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러시아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하는 점은 러시아가 정치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역의 상대국으로서 FTA를 하는 경우에 그런 정치적인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아무래도 특이한,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고려가 많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좀, 한·러시아 서비스 FTA를 체결함으로써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그 면이 아마 우리 기업들한테도 좀 유리한 게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조배숙 위원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조배숙 위원 국제적으로 FTA를 했기 때문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보니까 지금 관광 분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도 많이 가지만 의외로

또 러시아에서 한국 쪽으로 오는 수요가 많고 또 평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혹시 관광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분야를 원하는지 그런 것을 조금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지금 파악 중입니다.

○**조배숙 위원** 파악 중이신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 파주를 박정입니다.

분야가 다 달라서, 러시아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분야가 달라서 그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무역수지의 적자가 나는 분야가 1차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지금 우리가 120억을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 중에서 74%인 89억이 에너지입니다.

○**박정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2차 가공해서 갖다 팔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를 다르게 봐야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그리고 지난번 러시아…… 제가 오늘도 한·러 기업협의회 전체회의 2차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분야가—그때 부총리도 그렇고—대부분 일단 우리가 팔고자 하는 것들은 2차 생산품들인데 그쪽에서는 1차 물품들이 많이 있어요. 목재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서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 개방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이번에 협상한 것은 가금류만 한 거지요? 가금류 풀었지요, 닭 분야?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우리가요?

○**박정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아니요.

○**박정 위원** 아니에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때 논의가 돼서 다른 분야는 어렵지만,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풀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가금류에 대한 병이나 이런 것들에서……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위생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정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그건 제가 아까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관세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건 제가 농림부에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정 위원** 그 분야는 조류독감 때문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풀어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아마 그쪽 진행하는 것 같고요.

일단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서비스 중에서도 의료 쪽에서, 의료관광을 많이 오는데 실제로 관광 분야에서…… 아까 조사 중 이시라고 그랬지만 의료관광을 부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작년 2만 5000명이었습니다.

○**박정 위원** 그래서 삼백팔십몇만 원을 쓰고 가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역시 주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의료 쪽에서의 진출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쪽에서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류에 대한 쿼터량도 명태만 해도 2만 t밖에 못 받고 있잖아요, 그 전에 4만 t 이상 받고 있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박정 위원** 그런 분야에 대한 쿼터를 늘리거나 이럴 때 조건들이 병원을 좀 지어 주면 상대적으로 쿼터량을 늘려 주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랑 직접 관계가 안 되더라도 이런 의료 분야 또 그쪽에서 원하는 목재 수입 이런 것 등등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금 체결을 해 놔야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상품 FTA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우리 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지금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균형이 잘 잡힌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최근에 페스코하고 CJ대한통운하고 물류에 대한 계약을 해서 지금 물류체계도 잡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상품 수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것뿐만 아니라 일본 것이라든지 중국 것도 받아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를 지금 준비할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FTA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그리고 산업부장관님한테 여쭙보겠는데요.

지금 쇠빙선 분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LNG 쇠빙선에 대해서? 아까 야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추가 15척 지금 하려고 그러지요? 논의 중에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지금 논의 중입니다.

○박정 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좀 따로 말씀을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주로 말씀하신 게 좋은 전망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불리한 요인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걱정된다 하는 것은 없나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지금 러시아는 농수산물을 우리한테 수출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품일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상품 분야에서.

○이언주 위원 서비스 분야에서는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서비스 분야에서는 지금 특별히 우리한테 불리한…… 우리 서비스 분야가 150가지로 지금 HS코드로 해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개방할 것인지 그게 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가 개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폭 개방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개방 정도에 따라서 지금 한번 분석을 더 긴밀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언주 위원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언주 위원 러시아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교환이나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걱정할 만한……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서비스 협상에서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Mode 4라고 하는데 그쪽에 우리가 개방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언주 위원 개방을 안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아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개방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쪽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상대방 쪽에서 만약에 우리를 개방해 준다면, 예를 들자면 의사자격증·간호사자격증을 인정해 주겠다고 그랬을 때 러시아 인력이, 러시아 인력이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과학 분야 아니면 하이테크 분야 이쪽에서는 우리가 받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Mode 4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언주 위원 여하튼 간에 서비스·투자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건데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러시아나 이쪽 시장들이 결국에는 상품이 진출해야 우리한테 제대로 좋은 효과가 미치지 않을까, 거기다가 저는 장관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통상의 전략과 우리 전체 산업구조에 대한 전략이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가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것이 장기화되고 본격화됐을 때는 결국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를 유발한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나머지 FTA도 결국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서비스산업 자체도, 물론 서발법 문제도 있고 하지만 국내 서비스산업도 고부가가치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결국에는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야하고 서비스하고 상품 간 연계가 가능한 쪽으로 계속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통상전략을 할 때 통상 자체만으로 그 안에서 협상에 집중하는 것은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실 역할이고요. 장



관이나 차관이나 산자부 차원에서는 전체 우리 산업구조의 발전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실 것인지, 그 전략에 따라서 통상전략도 어떻게 하고 그 통상의 확대에 따라서 우리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산업 전환이 우리 목전에 닥친 큰 과제인데 이 산업 전환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재한 것 같고, 그 중장기 전략에 따른 통상전략이 함께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게 웬지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보고를 제가 못 받아 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산자위의 우리 위원님들한테 산자부장관께서 그런 보고를 종합적으로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통상은 어떻게 보면 산업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개방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입장에서 통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협상을 할 때도 각 업계와 연구계와 현재의 경쟁력 또 미래의 경쟁력도 물론 감안해서 통상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 산업 전체의 전망과 또 각 분야별의 세부적인 어떤 전략이 통상전략과 과연 어떻게 유기적으로 될 수 있는가, 좀 더 데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들여다보고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언주 위원**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통상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통상 부분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국내 산업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따로 노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어떤 장기 전략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급하니까 일단 FTA 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생각하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짧게 하나 좀 물어봅시다.

지금 북극항로와 관련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실제 실행이 언제쯤 가능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지금 여기서 시점하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단 쇄빙선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조를 해서 계약 납품이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거기 확대를 더 하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하자는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지 한 10년 가깝게 되는 것 같아요, 북극항로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그래도 최근에 저희들이 대우조선에 쇄빙선을 구체적으로 오더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건조했고 또 그것의 확대 여부 또 그것에 따라서 에너지 파트를 저희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 그런 논의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에너지 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쪽으로 돌아 북쪽으로 가는 게 운송비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그 항로를 항상 고민했던 것 아니에요? 그 얘기가 나온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 장비와 관련되는 것도, 쇄빙선이나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것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관련해서는 우리의 운항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실질적인 데이터 같은 것을 모으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 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 하는 것인지 뭔가 정책적인 부분을 풀지 못해서 못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기술적으로라든가 뭔가 불가능해서 불가능한 것인지, 그게 늦어지는 것인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기술적인 부분도 확인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무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구체화되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백재현 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워

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 방에 보고를 한번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저희들이 다시……

○**백재현 위원** 기술적인 부분과 전체 정부적인 판단과 또 여러 가지 수입과 지출의 구조, 어떤 게 득이 되고 어떤 게 마이너스가 될 역할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분석한 자료를 제 방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지금까지의 현황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현재 북극항로를 이용했을 때 어떤 게 득이 되고 어떤 게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런 것을 전체 묶어서, 그리고 그 시행시점이 언제쯤 가능한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요.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인지 그것도 같이 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예, 극복 과제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 짧게, 본부장님께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EU하고 FTA 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러시아하고 어디하고요?

○**김규환 위원** EU.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러시아하고 EU는 지금 FTA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하려고 그러는데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누가 반대합니까?

○**김규환 위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하고 EU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 예.

○**김규환 위원** 맞지요? 그런데 EU에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예상을 좀 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

님, 제 생각에 그것은 EU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EU하고 하는 것은 러시아가 관여할 바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것은 EU하고 우크라이나가 서로……

○**김규환 위원** 그러니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우크라이나하고 EU가 서로 FTA를 체결한다고 하면 그것은 러시아가 관여할 바라고 생각 안 합니다.

○**김규환 위원**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EU하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뭐 러시아가 여러 가지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김규환 위원** 그다음에 또 CIS 경제통합, 이것도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몰도바·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이런 데가 CIS 지역으로 다 묶여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다 합해 갖고 우크라이나하고 EU하고의 결합을 반대해 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같이 하면 지금 불렀던 이 나라들 몽땅 다 FTA를 같이 하는 거지요? 우리가 러시아하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니요, 그중에서 5개 나라만 하는 겁니다. EAEU는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하고 아르메니아입니다.

○**김규환 위원**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몰도바 이런 데는 안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닙니다. 5개 나라입니다.

○**김규환 위원** 우리가 FTA를 하게 되면 5개 나라만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상품에 관한 한.

○**김규환 위원** 한 번 더 내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러시아가 반대했던 나라, EU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이것을 반대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한다면 EU에서 어떤 브레이크를 걸 것에 대한 것도 예상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표 다음에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러 간 FTA 중에 상품 분야가 만약에 진행된다면 가장 피해 규모가 큰 곳이 어떤 분야에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농업 분야입니다.

○위성곤 위원 농업 분야는 어떤 부분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곡물·수산물 그리고 농산물입니다, 육류 쪽으로.

○위성곤 위원 육류 쪽으로?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위성곤 위원 러시아도 육류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소고기하고 닭고기 쪽이 강합니다.

○위성곤 위원 채소류는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채소류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러시아가 현재 대외적으로 FTA를 한 나라는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베트남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홍일표 상품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위원장 홍일표 서비스는 아직 없고?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서비스하고 상품을 둘 다 다 했습니다, 베트남하고는.

○위원장 홍일표 둘 다 다 베트남하고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예.

○위원장 홍일표 그러니까 아직 FTA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폐쇄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개척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러시아 쪽에서 의료관광이나 수요는 실제로 확인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원격의료 같은 수요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 맞는 말씀이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분당서울대병원이 지금 모스크바의 의료 자유무역구에 진출해 있습니다. 300명실 병원을 만드는 과정인데 거기서 원격진료 같은 게 가능하겠지요, 러시아 내에서.

○위원장 홍일표 장관님, 그래서 아까 이언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원격의료 같은 것을 해외에 가서는 하는데 국내에서는 못하고 있다, 이게 과연 맞느냐. 우리가 활발하게 해야 수출 상품으로서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이 런데, 산업의 구조 전환 이런 것에 대해서 산업부가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서면질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러분 그리고 산업부·중기부·특허청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강길부	곽대훈	권칠승	김규환
김기선	김삼화	김성환	박범계
박정	백재현	송갑석	우원식
위성곤	이언주	이용주	이종배
이훈	장석춘	정우택	정유섭
조배숙	최인호	홍의락	홍일표

○청가 위원(3인)

김관영	어기구	이철규
-----	-----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전문위원	박장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차	관관	성정	윤승	모일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	현	중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윤종	윤	종
통상교섭실장	유명희	명	희
산업정책관	박성택	성	택
지역경제정책관	안성일	성	일
산업기술정책관	김현철	현	철
소재부품산업정책관	강경성	경	성
중견기업정책관	조영신	영	신
에너지자원정책관	박기영	기	영
에너지산업정책관	이용환	용	환
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신	학
신재생에너지정책담당장	황수성	수	성
자유무역협정정책관	김정일	정	일
투자정책관	이호준	호	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중학	중	학
차관	최수규	수	규
중소기업정책실장	조봉환	봉	환
정책기획관	오기웅	기	웅
중소기업정책관	이준희	준	희
성장지원정책관	이병권	병	권
지역기업정책관	배지철	지	철
창업진흥정책관	변태섭	태	섭
벤처혁신정책관	이재홍	재	홍
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	주	현
상생협력정책관	이호현	호	현
특허청			
청장	박원주	원	주
기획조정관	강경호	경	호
산업재산정책국장	김용선	용	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박성준	성	준
정보고객지원국장	문삼섭	삼	섭
한국전력공사	김희천	희	천
한국가스공사	김영두	영	두
사장직무대리	양수영	수	영
한국석유공사	김형섭	형	섭
사장직무대리	김형근	형	근
한국수력원자력	김형섭	형	섭
주식회사부사장	김형근	형	근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섭	형	섭
사장	김형근	형	근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창	섭
이사장	이청룡	청	룡
(주)강원랜드대표이사	문태곤	태	곤

**【보고사항】**

○의안 회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8. 11. 6. 우원식·전재수·안호영·서영교·박재호·윤준호·신창현·김병욱·제윤경·송갑석·송옥주·민병두·노웅래·인재근·맹성규·김철민·홍의락 의원 발의)

11월 7일 회부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8. 11. 7. 정갑윤·송희경·박맹우·추경호·주광덕·김석기·곽대훈·박대출·조경태·권성동 의원 발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11. 7. 이찬열·황주홍·김종희·전재수·오제세·전혜숙·박재호·임종성·안규백·김철민 의원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8. 11. 7. 이종배·김상훈·곽대훈·유재중·이채익·金成泰·이은권·김명연·주호영·성일중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8일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8. 11. 8. 정동영·김종희·박주현·송갑석·심상정·유성엽·이찬열·장정숙·정인화·주승용·황주홍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8. 11. 8. 홍의락·송갑석·원혜영·정동영·금태섭·강길부·김성환·박정·유승희·우원식 의원 발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1. 8. 이언주·윤재옥·이동섭·이철규·황주홍·이찬열·임재훈·유기준·김수민·원유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9일 회부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김성환·김현권·우원식·백재현·홍의락·송갑석·이학영·박정·최인호·송옥주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김성환·김현권·우원식·백재현·

홍의락 · 송갑석 · 이학영 · 박정 · 최인호 · 송옥주 · 기동민 · 김정우 의원 발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여기구 · 위성곤 · 안호영 · 유동수 · 서삼석 · 박정 · 백재현 · 서영교 · 김두관 · 심기준 · 노웅래 · 윤준호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권칠승 · 송옥주 · 이상현 · 최인호 · 박홍근 · 김해영 · 박광운 · 김철민 · 유동수 · 황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2일 회부됨

**한국광업공단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3. 홍영표 · 정재호 · 송갑석 · 김성환 · 홍의락 · 강길부 · 박정 · 권칠승 · 박범계 · 우원식 · 강병원 · 신창현 · 김성수 · 최인호 · 위성곤 · 한정애 의원 발의)

11월 14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2. 이훈 · 박정 · 권칠승 · 정인화 · 송갑석 · 백혜련 · 최재성 · 김정우 · 정동영 · 김영호 · 윤준호 · 고용진 · 강훈식 · 금태섭 의원 발의)

11월 15일 회부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6. 정우택 · 최연혜 · 권성동 · 김정재 · 조훈현 · 김한표 · 윤종필 · 강길부 · 이진복 · 곽대훈 · 원유철 · 金成泰 · 박맹우 의원 발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6. 이헌승 · 김재경 · 송석준 · 유기준 · 조경태 · 김도읍 · 윤영석 · 추경호 · 윤상현 · 이양수 · 이진복 · 김상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9일 회부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9. 우원식 · 인재근 · 김현권 · 김영진 · 윤후덕 · 설훈 · 오영훈 · 이학영 · 표창원 · 추혜선 · 송갑석 · 윤준호 의원 발의)

11월 20일 회부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0. 서형수 · 기동민 · 전재수 · 금태섭 · 남인순 · 민홍철 · 김병기 · 한정애 · 윤호중 · 김병욱 의원 발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0. 송영길 · 유승희 · 박찬대 · 윤관석 · 박정 · 김정우 · 손금주 · 정성호 · 원혜영 · 윤후덕 · 김영호 · 심재권 · 금태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1일 회부됨